

「2019년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간제근로자 채용」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

「2019년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근로자 채용」의 최종
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6월 20일
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

1. 최종 합격자

채용직종	채용분야	선발예정 인원	합격자 현황		
			접수번호	성명	연락처 뒷자리
기간제 (육아휴직대체)	행정실무	1명	2019-사무-1	이○현	7981

2. 합격자 등록 안내

가. 등록대상 : 최종합격자

나. 등록기간 : 2019. 6. 20.(목) ~ 6. 28.(금)

다. 등록방법 :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
기획협력과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

라. 제출서류

- ① 서약서(결격사유 관련) 1부 <서식 1>
- ② 사진 1매(jpg파일) : 반명함판 3×4, 상반신 탈모

③ 채용 신체검사서 1부

<서식 2>

- 국·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(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)된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함.
-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검사에서 발급까지 3~5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은 후 제출(검사결과 합격여부 표기가 있어야 함)

3. 유의사항

가.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「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채용후보자 등록 및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이며,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※ 신원조회·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

다.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」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.

라.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☎ 문의 :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041-560-0013

서 약 서(결격사유 관련)

본인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임용에 있어 「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」 제12조(채용결격사유)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위 사실이 거짓일 경우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 . . .

서약자 :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귀하

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 진 (3cm × 4cm)
※ 압인 또는 계인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 (한 자)	()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가슴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
	우: ()		
안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치 아		호 흡 기 질 환	
간 질 환		신 경 질 환	
소 화 기 질 환		피 부 질 환	
순 환 기 질 환		정 신 질 환	
비 뇨 기 질 환		혈청검사(매독)	
흉부 X선 검사		기 타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합 격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합 격 <input type="checkbox"/> 판 정 보 류	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	
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[의료기관]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-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-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- '매독(syphilis)'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-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'혈소판 감소 자색반'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 - ※ 판정 오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